

## 국토교통부 공고 2015 - 1135호

「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(토목:일반사항)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
2015년 9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

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이 개정(‘15.1.6)됨에 따라 구조검토 대상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(안 1.5)

-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.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계, 거푸집 및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시행
  -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,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
  -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  -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
  -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
#### 나.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

-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건설기술관리법 → 건설기술 진흥법, 설계자문 → 기술자문, 설계감리 → 건설사업관리 등) 및 인용조항 변경